

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

- 음주운전, 직무태만 등 복무소홀 금지 -

교직원으로써 품위 훼손 혹은 불성실한 직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.

- 성매매 또는 성희롱,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**법규위반 행위 금지**
-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,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**직무 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금지**

[관련 : 인천대학교 교원 및 직원 인사 규정]

☑ 음주운전 징계 사례

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
→ **정직 1개월(중징계)**

모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
→ **정직 3개월(중징계)**

- 인천대학교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-



단, 한번의 음주운전으로도 해임 가능

☞ 최초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**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**이거나 **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**까지 징계 처분 가능

※ 최초 음주운전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최대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[관련 : 인천대학교 교원 및 직원 징계 규정]

☑ 근무시간 위반(음주행위) 및 허위 출장

공무원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,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 초과해 근무지로 복귀
→ **견책(경징계)**

공무원A는 허위로 49일 출장을 신청하여 해당 기간동안 등산 및 지인과 식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실시
→ **해임(중징계) 및 징계부가금 2배**

☑ 금품 · 향응 수수

공무원A는 기업대표자B로부터 직원 회식비 등 의례적인 명목으로 200만원 및 배우자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
→ **정직1월(중징계)**

공무원B는 직무관련자(기업 임원C 등 4명)와 골프를 치고 104만원을 각자 계산하고자 10만원을 주었으나, 부족금 16만원 미정산하여 향응수수
→ **감봉 1월(경징계) 및 징계부가금 2배**

[출처 : 공무원 징계 사례집, 2017]

